

의안번호	2207438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5.5.21.
추 계 번호	25B01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단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를 우선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779억원~1,488억원, 2030년에 880억원~1,68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143억원~7,913억원(연평균 829억원~1,583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1)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의 시행에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로 2026년에 779억원, 2030년에 88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143억원(연평균 829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1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이 해당함
 - (시나리오2)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은 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이며, 이 중 시나리오2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자 수가 2023년 대비 10% 증가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로 2026년에 1,198억원, 2030년에 1,353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372억원(연평균 1,274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3) 시나리오 3은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제도의 시행으로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16.9%) 수준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로 2026년에 1,488억원, 2030년에 1,68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7,913억원(연평균 1,583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3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신청증가율과 환수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1	779	803	828	853	880	4,143	829
	시나리오2	1,198	1,235	1,273	1,312	1,353	6,372	1,274
	시나리오3	1,488	1,534	1,581	1,630	1,681	7,913	1,583

- 주: 1.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건수와 승인율 및 환수율 등의 변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산재신청 증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증가한 경우,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신청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4.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가인상률의 변화,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과 우선 지급금 환수 등과 관련한 재원 이전 사이의 시차에 따른 산재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과 환수 사이의 시차로 인한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6.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 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u>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건강과 직무능력을 회복시키고</u> ,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신설	공단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를 우선 지급함. 다만, 우선 지급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보험급여로 한정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및 환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할 수 있음(제5항 신설) 제5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공단은 이를 도와야함. 조력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신설)	재량규정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조(목적)	—	- 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신설	○	- 공식추계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안에서 우선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환수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조항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 미대상 – 개정안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내용임 – 따라서 개정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제5항 신설),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하도록 규정하여(제6항 신설) 재해근로자의 산재급여 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및 공단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2025.4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2.9	3.2	3.9	3.8	3.8	3.8	3.8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우선 지급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²⁾ 및 휴업급여³⁾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한하여 산출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산업재해 불인정 건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금 환수에 따라 돌려받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재원 이전 사이의 시차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기금”) 운용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및 환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2025년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코드: 7084-104), 기관운

-
- 2)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 3)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영경비(코드: 7084-204), 청사임차비(코드: 7084-206)를 지원받고 있으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행정력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의 지급대상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로, 2023년 기준 우선 지급 대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건수를 추산하면 다음과 같음

① (최근 5년간 우선지급 대상 산재보험급여 실적) 최근 5년간 우선지급 대상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수급자 수는 다음과 같음

[표 2]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자 수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 요양급여	8,831	8,685	10,770	11,352	14,619
- 휴업급여	6,083	5,793	6,198	5,586	8,352
업무상 사고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 요양급여	745	705	909	961	1,046
- 휴업급여	597	561	697	717	797
출퇴근 사고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 요양급여	83	113	118	135	164
- 휴업급여	61	75	80	98	109

주: 1.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급여 1회차 처리일 및 승인일자 기준

2. 휴업급여: 2025.4.8.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자료: 고용노동부

② (요양급여 신청건수 및 승인현황) 2023년 기준 요양급여 승인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승인현황

(단위: 건)

구 분	신청건수	승인	승인률	불승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25,112	14,619	58.2%	10,493
업무상 사고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1,347	1,046	77.7%	301
출퇴근 사고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227	164	72.2%	63

주: 1.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급여 1회차 처리일 기준

2. 2023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③ (휴업급여 신청건수 및 승인현황) 휴업급여는 2023년 기준 수급자 수를 토대로 요양급여의 승인률을 적용하여 산출

-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휴업급여 신청건수는 유형별로 각각 2023년 기준 휴업급여 수급자 수(8,352건, 797건, 109건)에 해당 연도의 요양급여 승인률(58.2%, 77.7%, 72.2%)을 적용하여 산출

[표 4]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건수(추정치)

구 분		(단위: 건) 신청건수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	25,112
	휴업급여	14,347
업무상 사고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	1,347
	휴업급여	1,026
출퇴근 사고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요양급여	227
	휴업급여	15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가. 총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신청건수에 지급단가 및 지급일수를 적용하여 산출

- (신청건수) 산업재해는 ‘재해’라는 원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의 도입이 수급자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산재보험급여가 우선 지급되면 수급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
 - 시나리오1: 우선 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급여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으며,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2023년 기준 신청건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2: 우선 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자의 수가 10% 증가하여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3: 우선 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자의 수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16.9%⁴⁾) 수준으로 증가하여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유지되는

4) 자료: 고용노동부

주: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 1회차 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대한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접수에 따른 처리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서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신청 증가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기준 '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과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우선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⁵⁾은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선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산재기금으로부터 돌려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재정수입의 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⁶⁾에 근거하여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의 시행에 따른 총재정소요가 법안비용추계서상 추가재정소요의 산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표 5] 산재보험급여 신청건수(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건)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나리오 1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25,112	25,112	25,112	25,112	25,112
		업무상사고	1,347	1,347	1,347	1,347	1,347
		출퇴근사고	227	227	227	227	227
	소계		26,686	26,686	26,686	26,686	26,686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14,347	14,347	14,347	14,347	14,347
		업무상사고	1,026	1,026	1,026	1,026	1,026
		출퇴근사고	151	151	151	151	151
	소계		15,524	15,524	15,524	15,524	15,524
시나리오 2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27,623	27,623	27,623	27,623	27,623
		업무상사고	1,482	1,482	1,482	1,482	1,482
		출퇴근사고	250	250	250	250	250
	소계		29,355	29,355	29,355	29,355	29,355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15,781	15,781	15,781	15,781	15,781
		업무상사고	1,129	1,129	1,129	1,129	1,129
		출퇴근사고	166	166	166	166	166
	소계		17,076	17,076	17,076	17,076	17,076

5)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시 나 리 오 3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29,360	29,360	29,360	29,360	29,360
		업무상사고	1,575	1,575	1,575	1,575	1,575
		출퇴근사고	265	265	265	265	265
	소계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16,774	16,774	16,774	16,774	16,774
		업무상사고	1,200	1,200	1,200	1,200	1,200
		출퇴근사고	176	176	176	176	176
	소계		18,150	18,150	18,150	18,150	18,150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급일수) 추계기간 동안 지급일수는 2023년 기준 평균 지급일수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2023년 기준 지급일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6] 개정안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평균 지급일수

(단위: 일)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 요양급여	211	203	226	256	259
- 휴업급여	381	397	401	379	317
업무상 사고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 요양급여	137	131	133	139	143
- 휴업급여	157	155	149	136	148
출퇴근 사고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 요양급여	120	140	140	128	128
- 휴업급여	271	305	240	194	203

주: 1.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급여 1회차 처리일 및 승인일자 기준

2. 휴업급여: 2025.4.8.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소숫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자료: 고용노동부

- (지급단가) 2023년 기준 일 평균 지원금액을 토대로 산출
 - 향후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 수가인상률의 변화 등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7]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원단가

(단위: 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요양급여	29,500	29,970	28,280	27,960	31,570
휴업급여	58,940	59,850	62,600	64,840	67,950

자료: 고용노동부

- (요양급여)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해 지급되므로, 추계기간 동안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요양급여 지원단가에 2025년 수가인상률(1.96%⁷⁾)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2025년 기준 수가인상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2023년 기준 휴업급여 지원단가에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표 8] 산재보험급여 지급단가(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요양급여	33,463	34,119	34,788	35,469	36,165
휴업급여	74,937	77,771	80,700	83,743	86,96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산재보험급여 신청건수에 지원단가 및 지급일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만, 개정안은 우선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될 경우 총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7)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6%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2024.6.1.

[표 9]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총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사 나 리 오 1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2,175	2,217	2,261	2,305	2,350	—	—
		업무상사고	64	65	67	68	69	—	—
		출퇴근사고	10	10	10	10	11	—	—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3,407	3,536	3,669	3,807	3,954	—	—
		업무상사고	114	118	123	127	132	—	—
		출퇴근사고	23	24	25	26	27	—	—
	소계		5,793	5,971	6,154	6,344	6,543	30,805	6,161
사 나 리 오 2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2,392	2,439	2,487	2,536	2,585	—	—
		업무상사고	71	72	73	75	76	—	—
		출퇴근사고	11	11	11	11	12	—	—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3,748	3,889	4,036	4,188	4,349	—	—
		업무상사고	125	130	135	140	146	—	—
		출퇴근사고	25	26	27	28	29	—	—
	소계		6,372	6,568	6,770	6,978	7,197	33,885	6,777
사 나 리 오 3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2,543	2,592	2,643	2,695	2,748	—	—
		업무상사고	75	77	78	80	81	—	—
		출퇴근사고	11	12	12	12	12	—	—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3,983	4,134	4,290	4,451	4,622	—	—
		업무상사고	133	138	144	149	155	—	—
		출퇴근사고	27	28	29	30	31	—	—
	소계		6,773	6,981	7,195	7,417	7,650	36,016	7,203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준선

- 개정안에 따른 기준선은 산업재해 승인현황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총재정소요 중 산업재해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이하 ‘승인건수’)와 산업재해로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이하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으로 구분하여 추계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신청분에 대한 산재불승인 미환수금과 신청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및 산재불승인 미환수금이므로, 기준선(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과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을 차감하여 산출

- ①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한 이후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급여 지급분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 인정 결정 후 지급될 급여를 신청 시점에 우선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아님
-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 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023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추산

[표 10]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장래에 발생할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추정치): 2026~2030년
(단위: 건, 일,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급건수(A)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14,619	14,619	14,619	14,619	14,619
		업무상사고	1,046	1,046	1,046	1,046	1,046
		출퇴근사고	164	164	164	164	164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8,352	8,352	8,352	8,352	8,352
		업무상사고	797	797	797	797	797
		출퇴근사고	109	109	109	109	109
지급일수(B)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259	259	259	259	259
		업무상사고	143	143	143	143	143
		출퇴근사고	128	128	128	128	128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317	317	317	317	317
		업무상사고	148	148	148	148	148
		출퇴근사고	203	203	203	203	203
지급단가(C)	요양급여		0.033	0.034	0.035	0.035	0.036
	휴업급여		0.075	0.078	0.081	0.084	0.087
재정소요 (D=A×B×C, 억원)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1,266	1,291	1,316	1,342	1,368
		업무상사고	50	51	52	53	54
		출퇴근사고	7	7	7	7	8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1,983	2,058	2,136	2,216	2,302
		업무상사고	89	92	95	99	103
		출퇴근사고	17	17	18	19	19
	합계		3,411	3,516	3,624	3,736	3,853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②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받은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기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실제 환수되는 금액은 추가재정소요가 아님
- 총재정소요 중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023년 기준 요양급여 승인률을 적용하며 산출하며, 추계기간 동안 2023년 기준 승인률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우선 지급과 공단의 환수 사이의 시차로 인한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표 11]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시나리오1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909	927	945	963	982
		업무상사고	14	15	15	15	16
		출퇴근사고	3	3	3	3	3
	요양급여	소계(A1)	926	944	962	981	1,001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1,424	1,477	1,533	1,591	1,652
		업무상사고	25	26	27	28	30
		출퇴근사고	6	7	7	7	7
	휴업급여	소계(B1)	1,455	1,511	1,567	1,626	1,689
합계(C1=A1+B1)			2,381	2,454	2,530	2,608	2,689
시나리오2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1,000	1,019	1,039	1,060	1,080
		업무상사고	16	16	16	17	17
		출퇴근사고	3	3	3	3	3
	요양급여	소계(A2)	1,018	1,038	1,059	1,079	1,101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1,566	1,625	1,686	1,750	1,817
		업무상사고	28	29	30	31	33
		출퇴근사고	7	7	8	8	8
	휴업급여	소계(B2)	1,601	1,662	1,724	1,789	1,858
합계(C2=A2+B2)			2,619	2,700	2,783	2,869	2,958
시나리오3	요양급여	업무상질병	1,062	1,083	1,104	1,126	1,148
		업무상사고	17	17	17	18	18
		출퇴근사고	3	3	3	3	3
	요양급여	소계(A3)	1,082	1,104	1,125	1,147	1,170
	휴업급여	업무상질병	1,664	1,727	1,792	1,860	1,931
		업무상사고	30	31	32	33	35
		출퇴근사고	7	8	8	8	9
	휴업급여	소계(B3)	1,702	1,766	1,833	1,902	1,975
합계(C3=A3+B3)			2,784	2,870	2,958	3,049	3,144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환수액은 현행법⁸⁾에 따른 환수현황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023년 기준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67.3%)을 준용하여 산출
 - 환수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추계기간 동안 2023년 기준 환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및 환수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될 경우 환수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8)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표 12] 최근 5년간 부당·부정수급액 환수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보험급여 지급액(a)	징수결정액 (b)	환수액 (c)	지급액 대비 환수액 비율(d)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액 비율(e=c/b)
2019	5,529,360	18,795	8,224	0.15%	43.8%
2020	5,996,819	12,637	6,716	0.11%	53.2%
2021	6,452,940	8,960	6,648	0.10%	74.2%
2022	6,686,486	9,103	6,324	0.09%	69.5%
2023	7,284,941	13,384	9,005	0.12%	67.3%

주: 1. 징수결정액은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징수결정한 보험급여액에서 2024년 11월 말 기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징수결정 취소된 건수 및 금액이 제외된 금액임

2. 환수액은 해당연도 지급액에 대한 해당연도 환수액이 아닌 해당연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2024년 11월 말 기준 누적 환수액임

자료: 고용노동부

[표 13]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A1)	2,381	2,454	2,530	2,608	2,689	12,663	2,533
환수액(B1=A1×67.3%)	1,602	1,651	1,702	1,755	1,810	8,520	1,704
시나리오2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A2)	2,619	2,700	2,783	2,869	2,958	13,929	2,786
환수액(B2=A2×67.3%)	1,762	1,817	1,872	1,930	1,990	9,372	1,874
시나리오3							
불승인건수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A3)	2,784	2,870	2,958	3,049	3,144	14,805	2,961
환수액(B3=A3×67.3%)	1,873	1,931	1,990	2,051	2,116	9,961	1,992

주: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공단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구된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경우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급여 신청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779억원, 2030년에 88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143억원(연평균 829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1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환수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시나리오2)**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증가하는 경우이며, 이 중 시나리오2는 신청자 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로 2026년에 1,198억원, 2030년에 1,353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6,372억원(연평균 1,274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2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의 증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에 대한 급여 지급액 증가분과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임
- **(시나리오3)**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자의 수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16.9%)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로, 2026년에 1,488억원, 2030년에 1,68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7,913억원(연평균 1,583억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3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의 증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된 자에 대한 급여 지급액 증가분과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임
 - 시나리오3은 산재 신청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장래에 발생할 신청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표 1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총 재정소요(A1)		5,793	5,971	6,154	6,344	6,543	30,805	6,161
기 준 선	현재 기준 승인건수에 대한 보험 급여 지급액(B)	3,411	3,516	3,624	3,736	3,853	18,142	3,628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1)	1,602	1,651	1,702	1,755	1,810	8,520	1,704
	소계(D1=B+C1)	5,014	5,168	5,327	5,491	5,663	26,662	5,332
	추가재정소요(E1=A1-D1)	779	803	828	853	880	4,143	829
시나리오2								
총 재정소요(A2)		6,372	6,568	6,770	6,978	7,197	33,885	6,777
기 준 선	현재 기준 승인건수에 대한 보험 급여 지급액(B)	3,411	3,516	3,624	3,736	3,853	18,142	3,628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2)	1,762	1,817	1,872	1,930	1,990	9,372	1,874
	소계(D2=B+C2)	5,174	5,333	5,497	5,666	5,844	27,514	5,503
	추가재정소요(E2=A2-D2)	1,198	1,235	1,273	1,312	1,353	6,372	1,274
시나리오3								
총 재정소요(A3)		6,773	6,981	7,195	7,417	7,650	36,016	7,203
기 준 선	현재 기준 승인건수에 대한 보험 급여 지급액(B)	3,411	3,516	3,624	3,736	3,853	18,142	3,628
	불승인건수에 대한 환수액(C3)	1,873	1,931	1,990	2,051	2,116	9,961	1,992
	소계(D3=B+C3)	5,285	5,447	5,615	5,788	5,969	28,103	5,621
	추가재정소요(E3=A3-D3)	1,488	1,534	1,581	1,630	1,681	7,913	1,583

- 주: 1.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 후 최종적으로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미환수액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건수와 승인을 및 환수율 등의 변화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산재신청 증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증가한 경우, 사업주 날인제 폐지 도입에 따른 신청증가율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신청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4.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수가인상률의 변화,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과 우선 지급금 환수 등과 관련한 재원 이전 사이의 시차에 따른 산재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본 추계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과 환수 사이의 시차로 인한 기회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6. 본 추계서의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 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등이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향후 수급자의 임금변화 및 임금분포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산업재해 불인정건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금 환수에 따라 돌려받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산재보험급여 승인율, 회수 및 환수 실적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과 공단의 우선 지급금 환수에 따른 산재기금으로부터의 재원 이전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에 따라 기금 운용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하여 신청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최근 산업재해 수급자 수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자연증가로 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정소요 및 추가재정소요 등이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